

『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교육·복지·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동지역에 종합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·복지 환경을 개선,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【 취득재산 】

- 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
 - 토 지 : 23필지 42,032m²
 - 기준가격 : 5,955,190천원(가감정액)

4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5. 검토의견

- 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
- 구미시 구평동 126-1번지 외 22필지 42,032㎡(감정가 5,955,190천원)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본 건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동지역에 종합문화복지시설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, 부지 매입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